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87

발의연월일: 2021. 5. 18.

발 의 자:서삼석・이상헌・김민철

서영교 · 홍정민 · 윤재갑

김종민 · 강선우 · 김영배

주철현 · 김영진 · 서동용

김원이 · 임호선 · 이수진

최종윤 • 이용선 • 김철민

신동근 · 강병원 · 이개호

도종환 · 김승원 · 김정호

의원(24인)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산업의 스마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음. 해상에서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설치한 항로표지도 형상과 색채 등 물리적 신호 중심에서 디지털 정보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단방향 중심에서 쌍방향·다방향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의 「항로표지법」은 기존의 아날로그 관리체계에 머무르고 있고 기본계획의 수립 단위 기간도 10년으로 되어 있어 적절한 기술발전 수준을 예측한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우며, 신기술 연구와

신산업 촉진 등 항로표지의 지능화 등에 관해서도 법률적 근거가 갖 추어지지 않아 국제적인 항로표지 발전추세에도 부합하지 않고 있음.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2년 1월에 시행 예정으로 사업장 및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의무 이행이 필요하나 항로표지 설치·관리 및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와 종사자 등에 대한 보험 가입 등 안전을 담보하는 법률적 근거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항로표지법」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 수립 단위 기간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한편, 항로표지의 지능화와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항로표지와 관련한 정의 규정을 확장 및 신설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 나.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단위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 (안 제6조 및 제7조).
- 다. 위치·항법·시각정보(PNT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1 항제1호 및 제2호).
- 라. 보험 가입, 안전장비 착용 및 선박의 안전검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3조의2).
- 마.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사업범위를 확장함(안 제41조제4항제9호).

- 바.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3조의2 신설).
- 사. 항로표지 기반 해양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3조의3 신설).
- 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3조의4신설).
- 자. 항로표지 기반 해양정보 보호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3조의5 신설).
- 차. 자격증 등의 대여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2조의2 신설).
- 카. 정보관리의 안전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3 조).

법률 제 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장비·용품"이란"을 "장비·용품·설비·체계(이하 "항로표지 장비·용품등"이라 한다)"란"으로, "축전지 등"을 "축전지 등 기계류와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장비 및 용품을"을 "장 비, 용품, 설비 및 체계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4. "항로표지 지능정보화"란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의 지능정보 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항로표지 분야에 적용ㆍ융합하여 항로표지의 설치 및 시설관리를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에"를 "수립ㆍ시행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해상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식의 도입 등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항법정보의 제공)"을 "(항법정보 등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법정보"를 "정보"로, "LOR

AN"을 "LORAN, R-Mode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인공위성에서"를 "인공위성으로부터"로, "위치정보"를 "위치, 항법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박의 위치"를 "위치"로 한다.

제2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2(보험가입 등 안전의무) ① 항로표지 설치·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승선한 사람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항로표지 설치·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승선하는 자는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③ 항로표지 설치・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하는 선박은 선박의 선체, 기관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해당 선박이 적용받는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장의 제목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개발 및 검사"를 "항로표지 장비·용품등의 연구·개발 및 검사"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개발 등)"을 "(항로표지 장비·용품등의 개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장비·용품"을 각각 "장비·용품등"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검사)"를 "(항로표지 장비·용품등의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장비·용품"을

각각 "장비·용품등"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장비·용품"을 각각 "장비·용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비·용품"을 "장비·용품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설의 무상사용 기한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제41조제4항제4호 중 "장비·용품"을 "장비·용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항로표지 장비·용품등에 대한 산업화 촉진 및 지원 제4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대부기간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기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제5장의2(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 제43조의2(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 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체계 구축·운영과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을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 런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의 공동참여 또는 그 사업의 기반이 되는 관련 기술의 공동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3조의3(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한 해양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이를 활용하여 안전과 관련된 해양 상황, 항법정보, 해양 환경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이하 "항로표지기반 해양정보"라고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해양정보를 이용 및 가공할 수 있으며, 이를 해상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항행 중인 선박 등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국제표준체계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표준체계에 따라운영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해양정보를 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또는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해양정보를 활 용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 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해양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비·체계를 갖추고 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항로표지기반 해양정보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있다.

- ⑤ 항로표지기반 해양정보의 제공방법과 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기 반 해양정보서비스센터의 조직 및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등) 해양수산부장관(제5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신고에 관한 사무
 -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 등록에 관한 사무
 - 3. 제23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 4.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자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 5.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기 관 지정에 관한 사무
 - 6.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해양정보 중 해양의 안전 또는 해양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사무
- 제43조의5(보호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해양정보

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보안 및 장애 복구 등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정보 또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로 표지 정보시스템이나 체계에 대하여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당한 권한 없이 제1항의 정보보안 조치를 해제하여 정보를 불 법적으로 변형·반출·삭제하는 등 정보관리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 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시설을 파손하거나 방해전파를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 또는 개별 시스템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 3. 제1항의 정보보안 사고의 수습 또는 정보시스템이나 체계 장애에 대한 복구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 적 수단을 사용하여 현저하게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

제4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장비·용품"을 각각 "장비·용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43조의3에 따라 정보 또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장에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사설항로표지관리원
- 2.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원
- ②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 ① 제43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43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6.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한 자
- 7. 제5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그 명의의 사용이나 그 자격증 또

는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제5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로표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항로표지 <u>장비·용품"이란</u>	3 <u>장비·용품·설</u>
등명기(燈明器), 제어반, 충방	비・체계(이하"항로표지 장비
전(充放電)조절기 및 <u>축전지</u>	·용품등"이라 한다)"란
<u>등</u> 항로표지의 기능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u>장비</u>	<u>축전지 등</u>
및 용품을 말한다.	기계류와 프로그램, 어플리케
	<u>이션 등</u>
	장비, 용품, 설비 및 체계를
<u><신 설></u>	4. "항로표지 지능정보화"란 인
	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의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
	른 기술을 항로표지 분야에
	<u> 적용・융합하여 항로표지의</u>
	설치 및 시설관리를 효율화ㆍ
	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	<u> </u>
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 년 단위로 항로표지에 관한 기 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 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기 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3항 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항로표지 기본계획을 변 경할 수 있다.
 - 1. 제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결과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해상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 | <삭 제> 운 항로표지 방식의 도입 등

	<u>5</u>
	<u>년</u>
② (현행과 같음) < <u>삭 제></u> ④ <u>수립·시행에</u> 제7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해상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 식의 도입 등에 따라	
《아 제》 ④	<u>.</u>
④	② (현행과 같음)
	<u><</u> 삭 제>
	_
제7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u>해상환경의</u>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 식의 도입 등에 따라	<u>수립·시행에</u>
<u>해상환경의</u>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 식의 도입 등에 따라	
<u>해상환경의</u>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 식의 도입 등에 따라	
<u>해상환경의</u>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 식의 도입 등에 따라	게 # # # # # # # # # # # # # # # # # # #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 식의 도입 등에 따라	
<u>식의 도입 등에 따라</u>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
 <u><삭 제></u>	식의 도입 등에 따라
<u><삭 제></u>	
	<u><삭 제></u>

에 따라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제10조(항법정보의 제공) ① 해양 저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u>항</u> 법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 SS) 및 지상파항법시스템(LOR AN)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 위치측정용 <u>인공위성에서</u> 수 신한 신호를 근거로 여러 가 지 오차요인을 보정하여 생성 하는 <u>위치정보</u>(항공분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분 야는 제외한다)
 - 2. 지상에 설치한 송신국에서송출하는 전파를 이용한 <u>선박</u>의 위치, 항법 또는 시각(時刻) 등의 정보
 - ② ~ ④ (생 략)
- 제23조(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① 조 ~ ④ (생 략)
 - ⑤ 위탁관리업자는 다른 사람 에게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빌 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세10조(항법정보 등의 제공) ①	-
; 	<u>정</u>
<u> </u>	- –
	- —
<u>LO</u>	<u>R</u>
AN, R-Mode =	
· 1인공위성으로	早
터	<u>'</u>
<u></u>	
위치, 항법정보	
<u>키시, 영합경모</u>	-
	-
2	
<u>위</u>	친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1
~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신 설>

제4장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개 | 제4장 항로표지 장비·용품등의 발 및 검사

개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기능 향상과 항로 표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

제23조의2(보험가입 등 안전의무) ① 항로표지 설치・관리 및 위 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승선한 사람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 여야 한다.

② 항로표지 설치・관리 및 위 탁관리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승선하는 자는 구명조끼 등 인 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 하여야 한다.

③ 항로표지 설치・관리 및 위 탁관리업에 이용하는 선박은 선박의 선체, 기관 및 설비 등 에 대하여 해당 선박이 적용받 는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구ㆍ개발 및 검사 제37조(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제37조(항로표지 장비・용품등의 개발 등) ① -----

지 장비・용품을 개발할 수 있 --장비·용품등-----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2) -----장비·용품의 기능과 규격을 장비·용품등-----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정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3) -----장비 • 용품등----장비・용품의 품질이 우수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u>장</u>비·용 정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용 품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제38조(항로표지 장비・용품등의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 검사) ①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 지 장비·용품에 대하여 사용 장비·용품등-----전검사 · 정기검사 또는 변경검 사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 사에 불합격한 항로표지 장비 •용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

③ (현행과 같음)

- 17 -

제39조(검사업무의 대행 등) ① 제39조(검사업무의 대행 등) ① -

다.

③ (생략)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u>장비·용품</u>의 성능에 관한 검사(이하 "<u>장</u>비·용품 검사"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수있다.

② 국가는 검사대행기관이 <u>장</u> 비·용품 검사 업무를 대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 7조에도 불구하고 항로표지의 시험 및 검사 등을 위한 시설 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u><단서</u> 신설>

③ ~ ⑦ (생 략)

- 제41조(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 저 립 등) ① ~ ③ (생 략)
 - ④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 3. (생략)
 - 4. 항로표지 장비 · 용품의 연구

<u>장비·용품등</u>
<u>장</u>
비·용품등
② <u>장</u>
<u>비·용품등</u>
<u>다만, 시</u>
설의 무상사용 기한은 「국유재
산특례제한법」에 따른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세41조(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
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4
1. ~ 3. (현행과 같음)
4 <u>장비·용품등</u>

·개발 및 시험·검사 5. ~ 8. (생 략) <신 설>

9. (생략)

⑤ ~ ⑧ (생 략)

제4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기 국가는 기술원 운영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하거나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단

② (생 략) <u><신 설></u>

서 신설>

<신 설>

5. ~ 8. (현행과 같음)
9. 항로표지 장비・용품등에 대
한 산업화 촉진 및 지원
<u>10.</u> (현행 제9호와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4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u>박</u>
만,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대부기간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기간은 「국유
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장의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u>촉진</u>
제43조의2(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
부장관은 정보통신 및 인공지
능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 지
능정보화 체계를 구축・운영하
고 지속적으로 고도화 하여야

<u><신</u> 설>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체계 구축·운영과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을 관계 행정기관및 그 밖의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 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의 공동참여 또 는 그 사업의 기반이 되는 관 런 기술의 공동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의3(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한 해양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① 해양수산부장 관은 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이를 활용하여 안전과 관련된 해양 상황, 항법정보, 해양환경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이하 "항로표지기반 해양정보"라고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해양정보를 이용 및 가공

할 수 있으며, 이를 해상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항행 중인 선박 등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국제표 준체계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이 정한 표준체계에 따라 운영 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반 해양정보를 정보의 수집 ·가공 및 제공 또는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해 양정보를 활용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반 해양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비·체계를 갖추고 이 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항 로표지기반 해양정보서비스센 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항로표지기반 해양정보의 제공방법과 제4항에 따른 항로 표지기반 해양정보서비스센터 의 조직 및 설치·운영에 필요

<신 설>

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 등) 해양수산부장 관(제5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 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 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 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 리할 수 있다.

- 1.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 항제2호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신고에 관한 사무
-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 리업 등록에 관한 사무
- 3. 제23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 4.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관 리업자의 권리·의무승계 신 고에 관한 사무

<신 설>

- 5.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성능에 관한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 6.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항로 표지기반 해양정보 중 해양의 안전 또는 해양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사무
- 제43조의5(보호조치 등) ① 해양 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해 양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보안 및 장애 복구 등에 필요 한 보호조치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정보 또는 정보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 한 항로표지 정보시스템이나 체계에 대하여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당한 권한 없이 제1항의

 정보보안 조치를 해제하여 정보를 불법적으로 변형・반출

 ·삭제하는 등 정보관리의 안

제49조(수수료) ① 제38조에 따라 제49조(수수료) ①
<u>장비·용품</u>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검사대행
기관이 <u>장비·용품</u> 검사를 대
행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대행기
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대
행기관에 내야 한다.

② (생 략)

전을 침해하는 행위

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시설을 파손하거나 방해전파를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 또는 개별 시스템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3. 제1항의 정보보안 사고의 수습 또는 정보시스템이나 체계장에 대한 복구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현저하게 방해 또는지연시키는 행위

(49±(1-1-±) (1)
<u>장비 • 용품등</u>
<u>장비·용품등</u>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 ③ 제43조의3에 따라 정보 또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수 있다.
- 제52조의2(자격증 등의 대여 금 지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 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 다.
 -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

 술자격을 갖춘 사설항로표지

 관리원
 - 2.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원
 - ②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 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 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 용이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의

제53조(벌칙) <신 설>

<u><신</u>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신 설>

<신 설>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53조(벌칙) ① 제43조의5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43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u>③</u> ------

----.

- 1. ~ <u>5.</u>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각 호와 같음)
- 6.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한자
- 7. 제5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그 명의의 사용이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의 대

1. ~ 4. (생 략) <신 설>

5. ~ 13. (생략)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